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3년이 200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면축소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1조) :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안 제26조) : 과세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으로 축소
-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는 규정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5조)
-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안 제8조)
- 전용면적 40㎡이하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조항 신설(안 제10조)
- 외국인투자기업 중 사업의 양수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22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조항 신설(안 제24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인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본문 및 안 제1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인용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거나, 그동안 개정·폐지되어 명칭이 변경된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 제8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8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은 부동산도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 안 제10조제1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0조에서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1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년 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 제2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2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1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서도 10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안이라 판단됩니다.

○ 안 제24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4조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이나 법인의 본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기간에 차등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 안 제26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6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로 경감하자는 것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상 과제전환이 타당하다고 보나, 개정안은 적자상태가 누적된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5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토록 하는 감면조정의 기본방향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